

양식 저작물(또는 저작인접물) 이용 등에 대한 동의서

저작물(또는 저작인접물) 이용 등에 대한 동의서

성결초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저작권자(또는 저작인접권자) **예술강사 홍길동**은 (이하 '강사'라 한다)은(는) 본 동의서에 명시한 저작물(이하 '본 저작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용에 동의한다.

제1조(저작자 및 저작물)(또는 저작인접권자 및 저작인접물)

1. 저작자(또는 저작인접권자) 표시			
성명	홍길동	연락처	010-0000-0000
주민등록번호	123456-7896543	주소	경기도 00시 00구 00로
2. 저작물(는 저작인접물) 표시 <i>(저작물이 많은 경우 별지 활용)</i>			
제목(부제)	예) 국악 원격수업 콘텐츠	종별	영상저작물
수량	교육콘텐츠 3개 (총 출강시수 12시수 상당, 3차시분)		
연번	저작물(또는 저작인접물)의 내용 개요	공급일	
1	예) 판소리의 이해	예) 2022. 3. 10.	
2	예) 판소리 가창	예) 2022. 3. 15.	
3	⋮	⋮	
4			
5			

[메모:4] sku 2022-03-30 09:49
 콘텐츠를 제공받는 운영학교명 기재
 [메모:5] sku 2022-03-30 09:50
 콘텐츠를 제공하는 예술강사명 기재

[메모:6] sku 2022-03-30 09:50
 예술강사 인적사항 기재
 [메모:7] sku 2022-03-30 09:50
 제공하는 콘텐츠 관련 사항 기재
 - 종별의 경우 콘텐츠의 종류를 기재 (ex: PPT, 동영상 등)
 - 수량은 제공한 콘텐츠 수대로 작성하되,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를 활용하여 작성하여도 됨.
 - 저작물의 내용 개요는 콘텐츠 구성 내용 기재(a스쿨 수업 제목과 일치하도록 작성)
 - 공급일은 수업이 진행 된 일자 기재(a스쿨 수업 일자와 일치하도록 작성)

[메모:8] sku 2022-03-30 09:54
 콘텐츠 제공 수업의 경우 콘텐츠 1개당 4시수로 인정됨.
 교육콘텐츠의 개수가 3개 일 경우 교육콘텐츠 수량3개 X 4시수로 계산, 총 출강 시수는 12시수로 작성하고 3개의 콘텐츠가 제공되었으므로 3차시분 수업으로 기재

제2조(저작물(또는 저작인접물)의 이용허락) '강사'는 본 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저작인접권자로서 '학교'에게 본 저작물의 이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허락한다.

1. '학교'의 '2022년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과 관련한 학교 문화예술교육에 활용하는 경우('학교'가 원격 수업을 목적으로 저작물을 전송하는 경우 기타 교육에 수반되는 이용 일체 포함)
2. 본 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거나 본 저작물을 구성부분으로 하는 편집저작물을 작성하여 '학교'의 '2022년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과 관련한 학교 문화예술교육에 활용하는 경우

제3조(이용기간) 저작물의 이용기간은 본 동의서 작성일부터 '2022년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사업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4조(이용료) ① 본 이용 동의와 관련하여 '학교'는 '강사'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2조에 의하여 본 저작물을 이용하는 대가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강사'에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강사'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에 근거하여, 인도된 저작물에 따른 출강시수 상당의 강사비를 지급한다.

제5조(강사의 의무) ① '강사'는 본 저작물(또는 저작인접물)이 제3자의 저작권, 저작인격권을 비롯한 일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고, 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강사'가 해당 분쟁을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제6조(학교의 의무) '학교'는 '강사'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해야 한다. 콘텐츠 저작자는 동일성 유지권의 권리에 따라 자신의 저작물이 본래의 모습대로 활용되도록 할 권리를 지니며, '학교'는 예술강사의 동의없이 예술강사가 공급한 콘텐츠의 가공을 하지 않는다.

제7조(제3자에게 저작권 등 양도 및 이용허락) '학교'는 제3자에게 제1조 소정의 저작물(또는 저작인접물) 양도하거나 이용 허락할 수 없다.

제8조(불가항력) 천재지변 등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여 채무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되는 때에는 '학교'와 '강사'의 협의에 의하여 본 동의서에 따른 약정 사항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9조(동의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본 동의서 내 정함이 없는 사항은 저작권법과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각 조의 해석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와 '강사'가 상호 성실히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소송의 합의 관할) ① 본 이용 동의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시 '학교'와 '강사'는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② '학교'와 '강사'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 관할은 '학교'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추가약정사항 :

위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동의서 2통을 작성하여 '학교'와 '강사'가 서명, 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2022 . 03 . 00]

[메모:1] sku 2022-03-30 09:47
동의서 작성 일자

학 교

예술강사

주 소 : 경기도 00시 00구 00로

주 소 : 경기도 00시 00구 00로

학 교 명 : 성결초등학교

(직인)

성 명 : 홍길동

(인)

[메모:2] sku 2022-03-30 09:48
반드시 운영학교장 직인 필수

[메모:3] sku 2022-03-30 09:48
반드시 예술강사 서명 필수